

1. 학칙 개정(안)

가. 제안이유

- 학과 구조 개편에 따른 교원 소속에 관한 사항 명시.

나. 주요내용

- 1) 교원의 소속 범위를 학과 또는 학부 계열로 명시 하도록 함

다. 주요토의과제 : 없음

라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 : 없음
- 2) 예산조치 : 없음
- 3) 합 의 :
- 4) 기 타 : 신 · 구조문 대비표(별첨)

【별첨】 학칙 개정(안)

현행	개정 (안)
제6조(교직원) ① 우리대학에 두는 교원은 총장, 교수, 부교수, 조교수로 구분하며, 제5조 규정에 의한 <u>학과 또는 계열</u> 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	제6조(교직원) ① 우리대학에 두는 교원은 총장, 교수, 부교수, 조교수로 구분하며, 제5조 규정에 의한 <u>학과 또는 학부·계열</u> 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② ~③ 생략	② ~③ 현행과 같음
	부 칙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